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셀레니언자산운용 주식회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셀레니언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이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및 그 외 업무 관련 법규(이하 “관련법규”라고 한다)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부과 원칙)

-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은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수수료 부과 시 상품의 성격,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수수료 등”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집합투자업자보수: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판매보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신탁업자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수수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판매수수료: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 수수료와 후취판매 수수료로 구분한다.
 - 환매수수료: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 투자자문수수료: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문계약서에 따라 지급됨

제5조(수수료 부과 기준)

- 회사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6조(집합투자업 수수료 부과 절차)

-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회사는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신상품 개발과 관련한 제반 사항

을 다루는 상품위원회에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다만, 기존 상품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등 상품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합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투자자문업 수수료 부과절차)

1. 투자자문수수료의 수준 및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순자산총액에 투자자와 합의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회사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4. 성과수수료의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정된다.

제8조(공시)

동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사항)

상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개정,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범위의 변경, 내부 업무 절차 또는 조직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기준은 투자자문업 라이선스취득일로부터 시행한다.